

## 고압가스 품질검사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30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

※ 전자우편주소는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됩니다.

신청인	상호	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	
	사무소 소재지	전화번호	
	전자우편주소		

세부내용	사업의 종류	허가(신고·등록) 번호	허가(신고·등록) 연월일
	사업소 소재지		
	품질검사 대상자 [ ] 고압가스 제조자 [ ] 고압가스 수입업자		
	품질검사대상 고압가스 [ ] 프레온 22 [ ] 프레온 134a [ ] 프레온 404a [ ] 프레온 407c [ ] 프레온 410a [ ] 프레온 507a [ ] 프레온 1234yf [ ] 프로판 [ ] 이소부탄 [ ] 수소가스 [ ] 기타		
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위 검사대상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검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금액
------	----	---

### 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시료채취	→	품질검사	→	보고서 작성	→	결과통지
신청인		한국가스안전공사		한국가스안전공사		한국가스안전공사		한국가스안전공사		신청인